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578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19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신혜 의원이 2016년 11월 16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태수 의원이 2016년 11월 30일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 나. 위원의 위촉 해제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
- 라. 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문서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의 결과 및 5년마다 실시하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7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3호, 안 제19조, 안 제20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하고”를 “선출하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제1항제1호 중 “1회”를 “한 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하고</u>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 <u>선출하고</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제8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제8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u>1회</u>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 <u>한 번</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 출석위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 ----- <u>시작하고</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2조제2항----- ----- ----- -----.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청취) ----- ----- ----- 마련하여 ----- ----
제20조(교육) ① (생 략)	제20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 ----- ----- 마련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